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金勇錫 의원 대표발의)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42
------	------

2016. 12. 5.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23일, 김용석 의원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12.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 의원)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목적에 대학교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추가하고, 대학교 학칙의 설치 근거와 기본적인 이념을 신설하며,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총장의 임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대학교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목적에 대학교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추가하고, 대학교 학칙의 설치 근거와 기본적인 이념을 신설하며,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총장의 임기 등을 마련하는 대학교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대학교 운영 원칙 정비 등(안 제1조 및 제2조, 안제 2조의2와 안 제3조의2신설)

- 안 제1조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 등 조례 설치목적을 명확히 정해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자치법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안 제2조에서는 시립대 운영원칙을 정함에 있어서 인용하고 있는 기존의 「고등

교육법」 28조1)가 현재의 대학교 운영원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교육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2조2)를 근거법으로 추가하고자 함.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정과 관련한 근거는 자치법규의 체계상 운영의 원칙에서 정하기 보다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학교의 등록금의 범위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학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1호 규정 등에 따라 입학금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이 밖에 현재 시립대의 조직, 학사운영, 학생생활과 포상 등을 정하는 학칙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 제2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며, 대학교 운영의 기본원칙이 되는 학칙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임.

#### 다. 대학교운영위원회 운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는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을 비롯한 기타 대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주요기구이며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달리 시립대 운영위원회는 대학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주요 사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임의기구로 학칙의 개·폐와 같은 사항까지 심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
- 실제 최근 3년간 상위법령 개정과 교육부 정책변화 등에 따라 매년 7~8회의 학칙개정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할 때 연1회 정도 열리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논의하기 곤란함.

---

1)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립대 학칙개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월
학칙개정횟수	5회	7회	8회	8회
시립대 운영위원회 개최횟수	1회	1회	2회	1회

- 이처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현재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개정안과 같이 조례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릴 수 있음.
- 학칙 개정과 같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시립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립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해 운영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총장 설치 근거와 임명절차 등(안 제3조의3 신설)**

- 안 제3조의3은 시립대의 장으로 두는 총장에 대한 근거규정과 함께 역할과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립대를 대표하는 총장에 대한 근거를 기존과 같이 학칙에 두는 것 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은 총장의 위상이나 자치법규의 체계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총장의 임기와 임명절차에 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한 것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평가됨.
- 아울러 안 제3조제3항 후단과 같이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자 임용과 관련한 절차도 정해 대학행정의 공백을 막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것임.

〈현행 시립대 총장 임용 절차〉

①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 ②입후보자 등록 → ③후보대상자 확정 → ④후보자 선출 → ⑤후보자 선정결과 통보(위원회→총장) → ⑥총장 임용추천(총장 → 서울시장) → ⑦ 총장 임용(서울시장)

※ 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 다만,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시립대의 총장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여야 하고, 추천일부터 임용일까지의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자칫 안 제3조의3항 규정과 같이 1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용하도록 할 경우, 법령이 정하고 있는 60일을 초과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지연되거나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120일 이내에 임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해당 조문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42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나치게 빈번한 학칙개정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고, 총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과 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중 학칙개정 부분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및 안 제3조).
- 나. 대학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추가함(안 제3조의2제2항).
- 다. 총장 후임자 선출기한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3조의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제2항 중 “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를 “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의3제3항 중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를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서울 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규정함으로써 대 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 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 구역량을 향상시킴--.	<개정안과 같음>
제2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 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 라 한다)는 설치목적과 「고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대학교의 이념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	제2조(운영의 원칙) ----- ----- ----- 「교육기본법」 제2조 및 ----- ----- 따른 교육 이념과 대학의 목적 ----- ----- ----- <삭제>	<개정안과 같음>

<p>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 회계를 둔다.</p>		
<p>&lt;신설&gt;</p>	<p>제2조의2(학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p> <p>② 대학교의 학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p> <p>&lt;신설&gt;</p>	<p>제2조의2(학칙) ①~ ② &lt;개정안과 같음&gt;</p> <p>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조(대학교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과 기타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p> <p>1.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p> <p>2. 교육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p> <p>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p>	<p>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p> <p>1. &lt;개정안과 같음&gt;</p> <p>2. &lt;개정안과 같음&gt;</p> <p>3. &lt;개정안과 같음&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 ③ &lt;생략&gt;</p>	<p>4. <u>교원 임용 및 학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p> <p>5.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상 시장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p> <p>② ~ ③ &lt;현행과 같음&gt;</p>	<p>4. <u>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u></p> <p>5. &lt;개정안과 같음&gt;</p> <p>② ~ ③ &lt;개정안과 같음&gt;</p>
<p>&lt;신설&gt;</p>	<p>제3조의2(대학교의 재정) ①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p> <p>② <u>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u></p>	<p>제3조의2(대학교의 재정) ①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p> <p>② <u>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u></p>
<p>&lt;신설&gt;</p>	<p>제3조의3(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p> <p>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p> <p>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u>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④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총장 후보자</p>	<p>제3조의3(총장) ① &lt;개정안과 같음&gt;</p> <p>② &lt;개정안과 같음&gt;</p> <p>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교육공무원법 임용령</u>」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④ &lt;개정안과 같음&gt;</p>



	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대학, 학과)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 다음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제4조(대학, 학과)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5조(대학원) 「고등교육법」 ----- ----- ----- 1. ~ 3. (생 략)	제5조(대학원) 법 ----- ----- ----- ----- 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8조(감독) (생 략)  <u>&lt;신 설&gt;</u>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안과 같음>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현행 제1항 중 “설치목적과”을 “「교육기본법」 제2조 및”으로, “따라 대학교의 이념”을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으로 각각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학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상 시장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학교의 재정) ①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의3(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총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단서 및 각 호를 삭제하고, 제5조 중 “「고등교육법」”을 “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설치)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u>-----.</p>
<p>제2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u>설치목적과 「고등교육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u>따라 대학교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u>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u></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2조(운영의 원칙) ----- ----- 「<u>교육기본법</u>」 제2조 및 ----- <u>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u> ----- -----.</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p> <p>제2조의2(학칙) ① <u>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u></p> <p>② <u>대학교의 학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u>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3조(대학교운영위원회) ① <u>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과 기타 대학교 운영에 관한</u> ----- -----.</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 &lt;신설&gt; &lt;신설&gt; &lt;신설&gt; &lt;신설&gt;</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① <u>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u></li> <li>2. <u>교육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u></li> <li>3. <u>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u></li> <li>4. <u>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u></li> <li>5. <u>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상 시장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u></li> </ol>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대학교의 재정) ① <u>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u></p>

<신 설>

제4조(대학, 학과)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 다음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제5조(대학원) 「고등교육법」 -----

1. ~ 3. (생 략)

제8조(감독) (생 략)

<신 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의3(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총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대학, 학과)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대학원) 법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